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를 간소화하기 위해 ‘창작내용의 요점’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디자인공보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의 설명이나 도면 이외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서지사항에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중복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어 출원인의 불편이 제기되어 온 바, ‘부분디자인’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디자인공보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고, 만약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등록받을 수 없음. 이 경우 거절이 확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에 따라 출원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나, 거절이 확정된 출원 중에 법 제43조에 따라 비밀디자인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출원이 협의불성립으로 인해 거절된 경우, 그 출원 내용을 거절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00. 00.) 결과, 특기사항 없음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 중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모든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8호·제10호가목 및 제10조제3항제8호·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디자인공보) ① (생 략)	제10조(디자인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 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 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및 제 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 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②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창작내용의 요점</u>	<u><삭 제></u>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10. ----- --
가. <u>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 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디자인 의 등록이라는 사실</u>	<u><삭 제></u>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 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	③ ----- -----

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단서 신설>

1. ~ 7. (생략)
 8. 창작내용의 요점
 9. (생략)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 . 다만,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 중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모든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 <삭 제>
9. (현행과 같음)
10. -----
-
- <삭 제>

<u>이라는 사실</u> 나. ~ 마. (생 략) 11. (생 략) ④ · ⑤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766